# 외환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

2025. 3. 7.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목 차

Ⅰ. 추진 배경1
Ⅱ. 추가 방안2
1. 외환 유입제한 완화 2
2.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유도3
Ⅲ. 향후 추진 계획5
[참고]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6

## Ⅰ. 추진 배경

- ① 그간 정부는 외환 유출에 대해서는 자율적 기조를 유지해온 반면, 외환 유입은 대외건전성 관리를 위해 엄격히 제한
- ② 이러한 유입제한 기조는 **견고한 대외안전판 구축**에 기여하였으나, 유출우위의 '수급불균형' 구조가 누적되면서 **외환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제약**\*하는 부작용 야기
  - \* WGBI 편입 등 여건 성숙에도 불구, 원활한 외환공급 없이는 시장 발전에 한계
  - (대외건전성) 외환보유액이 4,000억불을 상회하는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순대외금융자산 1조불 흑자국 반열에 진입
    - \* 외환보유액(억불): ('96년말) 332 ('08년말) 2,012 → ('24년말) 4,156
    - \* 순대외금융자산(억불) : ('96년말)△635 ('08년말)△703 → <u>('24년말)+11,023</u> < '24년 한해 동안 +2,920억불 증가(역대 연간 최대 증가폭) >
  - ② (외환수급)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실물부분 외환공급을 해외 자산 증가에 따른 금융부문 수요가 초과하며 유출우위구조 형성
    - (유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해외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개인 해외투자 확대\*가 새로운 유출요인으로 부각
      - \* 개인보유 외화증권 잔액(억불, 기말) : ('10)112 ('15)219 ('22)767 ('23)1,042 ('24)1,587
    - (유입)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 유입은 한미 금리역전 지속 등 영향으로 예년 대비 감소세 지속
- ③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정부는 근본적 외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24.12.20)」을 발표하고 적극 이행중\*
  - \* 선물환포지션 확대(기재부장관 통첩), 외화대출규제 완화(한은 세칙 개정) 등 추진 완료
  - o 다만, 금년 들어서도 美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 하는 가운데, **외환 유출우위 구조가 지속**\*되는 양상
    - \* 외국인의 경우, 금년 1월 중 국내 증권투자 △16.1억불 유출 (금감원) 내국인(개인투자자)의 경우, 금년 1~2월중 해외 증권투자 △108.1억불 유출 (예탁결제원)
  - □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년말 유입규제 완화 정책을 보강하고, 근본적으로 국내 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강구

## Ⅱ. 추가 방안

## 1. 외환 유입제한 완화

◇ 그동안 유지되어 온 엄격한 외환유입 규제를 조정함으로서 누적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달러수요 우위) 구조 완화

## ①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 (현행) 기업의 과도한 환혜지 방지 위해 금융기관의 對기업 외환파생상품거래(선물환 등)를 통한 위험혜지비율\*을 100% 한도로 제한
  - \* 위험헤지비율(A/B, %): '외환파생상품 거래액'(A) / '수출액 등 실물거래 기준금액'(B)
  - \*\* 실물거래 기준금액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의 과거 실적(예: 직전 3개년 수출입실적 평균 등)을 확인하여 한도를 부여
  -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09년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125%로 도입했으나, '10.6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위해 100%로 하향
  - 환혜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기업에 대해서는 실질 수요\*를 적극 고려하기 위해 위험혜지비율 상향 요구 상존
  - \* 수출액 등 증가분(물량 증가, 물가 상승 등), 여타 경상거래(예: 해외자회사 임금지급)
- (개선)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실질 수요를 반영해 125%까지 확대
- (조치사항) 은행·금투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 ②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제한 해소

- \* 김치본드(Kimchi Bond) : 국내 채권 시장에서 달러 등 외화 표시로 발행하는 채권
- (현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을 통해 거주자가 원화용도로 발행한 김치본드에 대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매입 제한
  - 원화용도 김치본드 발행이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1.7월)
- 이 (개선) 원화용도 김치본드에 대한 매입 제한규제 해제
  - \* (제도개선 효과) 국내 기업 등의 원화용도 외화차입 확대 → 차입한 외화를 활용한 원화 환전 소요(현물환 매도) 확대 →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
- ㅇ (조치사항) 한국은행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

#### ③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완화

- (현행) 그간 외환·금융당국은 거주자의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을 자제토록 권고
  -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 실효성 유지 등을 위해 운영
- (개선)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시설자금용 차입은 허용\*
  - \*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 완화(한은 세칙 개정, 2.27일)내용과 동일 취지
- o (조치사항)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방침 확인

## 2. 국내자산에 대한 투자유도

◇ 국내자산 매력도 개선, 해외투자 유인 조정을 통해 '국내자산 투자 확대 →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 []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 촉진

- (현행) 국내주식·국내주식형펀드로 투자대상을 한정하되 일반 투자형 대비 비과세한도 2배 확대된 국내투자형 ISA 신설 추진\*
  - \* 박대출 의원안('24.6월 발의, 기재위 계류중)
- (개선) 국내주식 투자 촉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을 법정 한도(40%)\*보다 상향 검토
  - \* 박대출 의원안은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규정
- o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②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 (주요내용) 주주환원 촉진세제<sup>1</sup>, ISA 납입·비과세한도 확대<sup>2</sup>
  등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
  - 1」<sup>①</sup>주주환원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 법인세 5% 세액공제 <sup>②</sup>배당 증가금액(직전 3년 대비 5% 증가분 등) 저율 분리과세
  - 2」(납입한도) 年 2천만원<총 1억원> → 4천만원<총 2억원> (비과세한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o (조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③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 (현행)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 내역서\*를 국제예탁결제기구 또는 국내 금융회사를 통해 국세청에 제출 \* 국채 매수·매도 및 이자 지급 등 상세 내역을 국세청에 월 1회 보고 필요
- 이 (개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비거주자(거주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外 서류 제출 모두 폐지
  - 투자자는 <sup>①</sup>국제예탁결제기구(예: 유로클리어) 또는 <sup>②</sup>국내 금융기관 (외은지점 포함)에 기본 정보(성명, 주소, 국적, 식별번호)만 제출
    - ※ <sup>①</sup>국제예탁결제기구 통한 거래: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의무 폐지 <sup>②</sup>국내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 비과세 신청시 기본 정보만 기입
  -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내역서 등 모든 추가 서류 폐지
  - 국제예탁결제기구(OFI)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의무 폐지\*
    - \* 국세청 요청시 보관하고 있던 투자자 기본 정보만 사후 제출하면 의무이행 완료
- ㅇ (조치사항)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28일 旣완료)·시행규칙 개정

#### 4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 명확화

- \* 국채의 보관·결제를 위한 국제예탁결제기구의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하여 증권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통합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 계좌 신설(2.19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o (현행) 국내 금융회사에 계좌 개설시 외국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고객확인을 하고 실제소유자도 확인하여야 함
- (개선) 일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국채통합매매계좌 개설 및 거래시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 \* 1) 국내 금융회사등이 국채통합매매계좌 명의자에 대한 고객확인을 적절히 이행
    - 2) 국채통합매매계좌 명의자인 **외국 금융회사**가 본인 고객인 최종투자자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기준에 따라 적절히 이행**한 경우
    - 3) **FATF 상호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에 소재**한 외국 금융회사가 국채통합매매계좌의 명의자인 경우
    - 4) 국채통합매매계좌 명의자인 **외국금융회사**가 소재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관련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증빙된 경우
- o (조치사항)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 본 안건으로 갈음

## [5]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I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 마련

- \* 상장지수상품(ETP, Exchange Traded Product) : 증권·지수 등과 연동되어 있는 투자상품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을 의미
- (현행) '국내' 레버리지 ETP·장내파생상품 투자시 적용되는 보호 장치가 '해외' 레버리지 ETP·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는 未적용
  - 국내 레버리지 ETP·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는 **사전교육**<sup>1</sup>, 모의 거래<sup>2</sup>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 존재
    - 1」(국내 레버리지 ETP 및 장내파생상품) 사전교육 1시간 이상
    - 2」(장내파생상품) 모의거래 3시간 이상
- (개선) 해외 레버리지 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시에도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 부과
- ㅇ (조치사항)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 Ⅲ. 향후 추진 계획

- 1 각 과제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일정에 맞춰 신속히 추진
  - 추진 과정에서 **우리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기관 협조 하에 **면밀히 모니터링**
- ② 지난 12월 및 금번 방안의 시행 효과,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 검토

## 주요 정책과제 추진일정

	정책과제	일정	관계기관
외환유입 제한완화	선물환매매 등 외환파생상품거래 제한 완화	상반기중	금융위 금감원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 제한 해소	상반기중	한은
	국내은행 해외점포를 통한 원화용도 외화차입 제한 완화	즉시	기재부 금감원
국내자산 투자유도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통한 국내주식 투자 촉진	'25년중	기재부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 재추진	′25년중	기재부
	외국인투자자 국채 투자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3월중	기재부
	국채통합매매계좌 실명·고객확인 범위 명확화	즉시	금융위 기재부
	해외 레버리지 ETP 및 장내파생상품 투자 안전장치 마련	′25년중	금융위 금융투자 협회